

1997. 10. 10

제69회 임시회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홍표)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안 이 유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른 위탁금융기관의 지정, 용자금 취급 규정, 용자에 따른 부실채권 방지, 저소득 주민의 대출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필요한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가. 기금의 조성(조례안 제3조)

구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보조금, 용자금 상환금

나. 기금의 관리 운용(조례안 제4조)

- 기금의 운용 관리 ⇒ 구청장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위탁 ⇒ 수탁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대여금 방식으로 위탁관리
- 기금의 용자 ⇒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신뢰도 제고

다. 용자대상(조례안 제6조 제1항 제7호)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라. 용자한도(조례안 제8조)

- 용자한도 2,000만원 이하

마. 용자금의 대부신청(조례안 제9조 제2항)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바. 용자금의 상환(조례안 제11조)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되 거치기간 만료 후 연4회 균분상환

■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용·관리)

■ 검토의견

- 19세기 초반까지는 당시의 자유주의적인 정치·경제사상에 따라 국가의 작용은 **국방과 질서유지**에 한정되고 기타의 영역은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에 일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산업혁명에 따르는 산업·경제의 획기적인 발달에 따라 공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른 도시의 급속한 팽창·발전 및 새로운 사회계층으로서의 노동자계층의 등장등 종래와는 다른 사회구조·여건 등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사회구조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상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 국가의 활동에 의존하여야 할 영역이 증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기능도 이미 국방·질서유지라는 소극적 활동에 한정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새로운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도 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거나 선언적 규정만은 아니고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보아 그에 기하여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와같은 **사회국가원리**와 더불어 급부행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리들이 강조되고 있는 바, **보충성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평등원칙, 과잉급부금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그것입니다.

○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측면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개정사항이 그 내용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용자대상을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에서 “**대학**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축소하였는데, 이것은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을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평등원칙, 과잉금부금지원칙 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 제출된 조례개정안중 다음의 점들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3조 제1항에서

① 2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② 3호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 또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타 수입금”이란 문구는 그 내용이 모호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이므로 **삭제**함이 좋을 듯합니다.

둘째, 개정안 제3조 제2항 “이 조례 시행당시까지 적립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는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개정안 제4조 제2항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넷째, 개정안 제6조 제1항 7호의 “-----대학교-----”는 “-----대학-----”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14조에서

①“(용자금 및 상환금 회수)”를 “(용자금 회수 및 상환 등)”으로 변경하고

②제1항의 “용자금 및 상환금 회수”는 “용자금 회수 및 상환”으로 수정함이 좋을 것이라 봅니다.

○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짜임새있고 알찬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